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, 인권교육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
- 조문 이동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(안 제18조)
-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,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,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(안 제19조~제21조)
- 기타 용어 정비 : 증진하고→높이고, 함양하고→길러, 배양하고→기르고, 행하는→하는, 응한다→따른다, 보궐위원→새로 위촉된 위원 등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, 인권교육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체육인 인권보호 문제는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무로 도내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
-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,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,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기타 법령 용어 정비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